

“영상저작물 권리관계 특례규정으로 해결”

Q VOD 동영상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권리범위는?

동영상의 경우에는 우선 영상제작물로서 보호되며, 기본적으로는 다른 형태의 저작들과 마찬가지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적용된다. 여기에는 복제·공연·방송·전송·전시·배포 등의 권리가 포함됨은 물론이다. 이러한 동영상을 회사에서 제작한 경우, 저작권자가 누구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저작물에 창조적 기여를 한 자가 저작권자가 되나, 이러한 저작물이 단체의 업무로서 기획되어 제작된 것이고, 단체 명의로 공표된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당 단체가 저작권자가 된다.

한편,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특성상 관계자가 많게 되어,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관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이를 간편하게 조정하고 있다. 즉, ‘영상제작(이는 비용을 들여 영상을 제작한 자로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와는 구별되는 개념)’는 특약이 없는 한, 제작에 협력한 자들이 저작권을 취득할 경우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양수한 것으로 추정하고, 또한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등과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양도받는 것으로 하며, 또한 이들 권리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저작권법 제74조, 제75조, 제76조)

Q VOD 동영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및 절차는?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침해의 정지, 예방, 담보청구, 침해물의 폐기청구, 가치분 등을 통해 침해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를 구할 수 있고, 결국에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은 손해배상청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통해 금전배상 또는 필요한 조치를 구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법은 이러한 손해액의 입증과 관련하여 손해액을 비교적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다만, 저작물과 관련해 구체적 손해의 확정이 어렵고, 일단 타인에 의하여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이를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금전적으로 전보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상 가치분을 통하여 긴급한 조치를 취하고, 이후 손해배상 등의 정식 배상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가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간접강제제도를 신청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금전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침해된 저작물이 등록된 경우에는 침해자의 고의, 과실이 추정되어, 침해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고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월간 <디지털콘텐츠>와 한국콘텐츠산업연

합회(KIBA)는 건강한 DC 유통환경 조성

캠페인'의 일환으로 DC기업들이 경영일선

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VOD 동영상 콘

텐츠 제작물에 관한 저작권의 권리범위와 저

작권이 침해당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인 대

응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